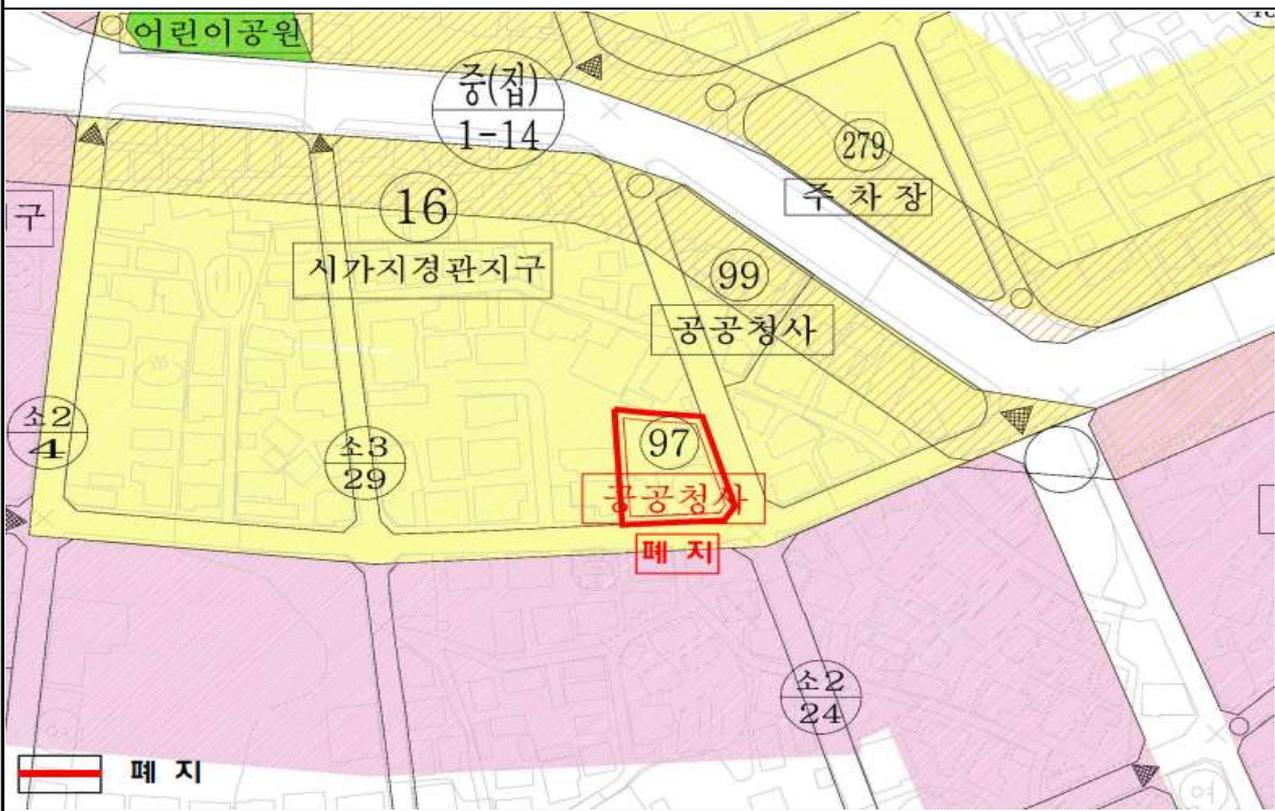


【붙임】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



위치도(당산5길 41)

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97) 결정 안

의안 번호	1689	【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97호) 결정(폐지)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】
		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0. 11. 13.(금)
- 제출 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13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4.(금)

2. 제안이유

- 우정동행정복지센터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현재 신청사가 신축 중으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써의 용도가 없어져,
- 해당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을 폐지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폐지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97	공공청사	우정동 행정복지센터	중구 우정동 282-18일원	814.9	감) 814.9	-	'05.10.13 울(중)고50호	시설 폐지

-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폐지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97	공공청사	• 시설폐지 A=814.9㎡ → 0㎡ (감 814.9㎡)	• 우정동 행정복지센터(공공청사_99) 신설 및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(97) 시설 폐지

4. 근거법규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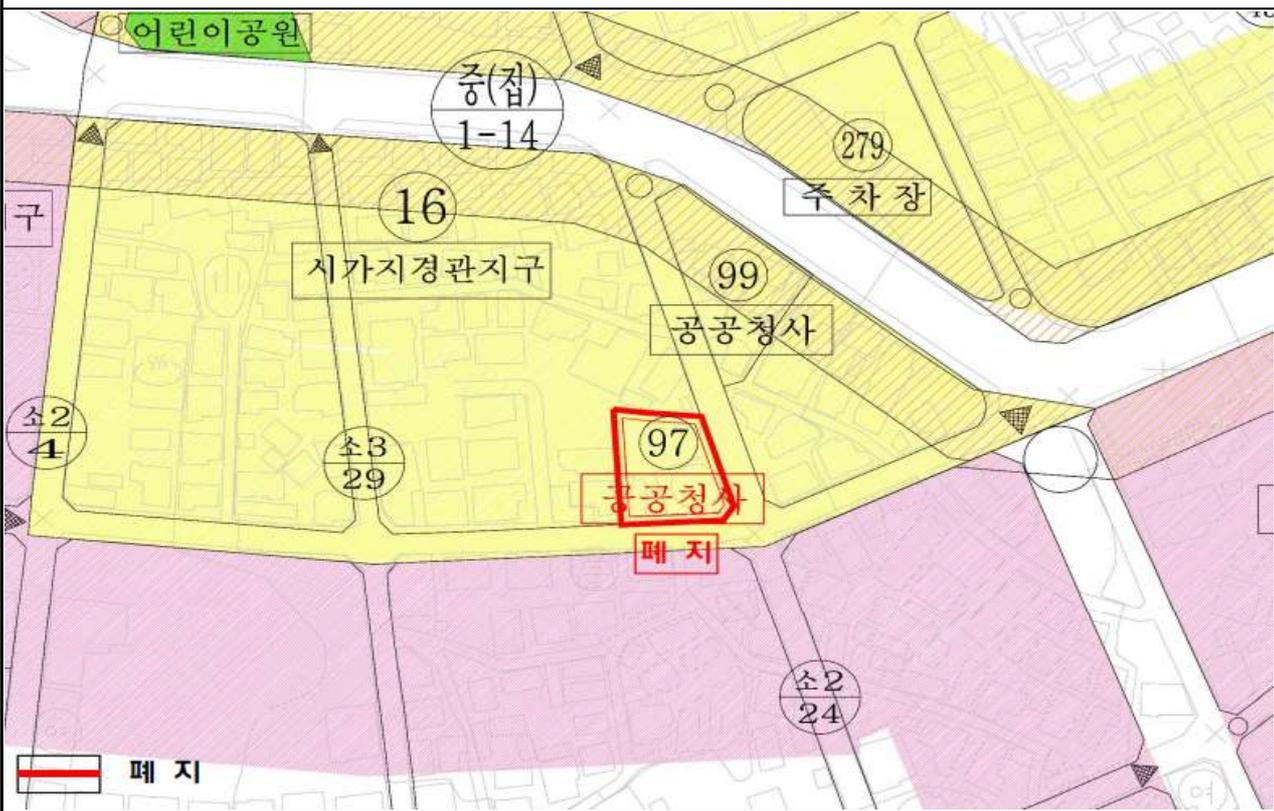
- 우정동 주민센터는 1976년도에 건립, 44년이 경과된 낡고 노후된 시설로 공간협소와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어, 우정동 행정복지센터(공공청사-99) 신설 및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-97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이용의 편의성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

6.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: 불임

【붙임】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



위치도(당산5길 41)

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97) 결정 안